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1월 1일(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1년 11월 5일
- 다. 상정일자 : 2001년 11월 8일(제1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 휴가를 연장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임신중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안 제22조 제2항)
- 근로기준법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본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출산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해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범수)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14876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되어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개정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임.

- 주요골자는 임신 중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근로기준법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본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출산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해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도내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여성 점유율은 교원이 51.7%, 일반직 공무원은 30.2%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4,651명중 여성 교원이 2,699명으로 58.0%이며
- 교원과 일반직을 합산하면 47%에 달하고 이중 가임 여성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 출산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과 이에 따른 대행자 지정 등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제반사항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부칙 제1항 중 일부 조문상 모호한 자구 및 문맥을 변경 수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부칙 제1항 중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1. 11. 8

제안자 : 이길하 의원

1. 수정이유

- 부칙 제1항 중 일부 조문상 모호한 자구 및 문맥을 변경 수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칙 제1항 중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582호중 개정조례안 부칙 제1항 중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p>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 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p> <p>② (생 략)</p>	<p>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p> <p>② (현행과 같음)</p>